#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85

발의연월일: 2022. 5. 3.

발 의 자:정우택·김예지·김정재

박성중・배준영・송석준

양금희 • 유경준 • 이종성

조경태 · 지성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3억원(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여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 피스텔이 제외되어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 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 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을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로, "3억원"을 "6억원"으로, "4억원"을 "7억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억 5천만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u>주택(「지방세</u>	<u>주</u> 택(「지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른 주택 및 「주택법」 제2조
<u>같다)을</u>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	<u>으</u>
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	
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	
의 가액"이라 한다)이 <u>3억원</u>	<u>6억원</u>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u>4억원</u>	<u>7억원</u>
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	
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3년 12월</u>	<u>2025년 12월</u>

<u>31일</u> 까	지 지방세	를 감면(이 경
우 [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
다. 다	만, 취득자기	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u>1억 5천</u><u>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u>1억 5천</u>
   <u>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② ~ ⑥ (생 략)

31일	
1	- <u>3억원</u>
2	- <u>3억원</u>
② ~ ⑥ (혀해과 같음)	